□ 寄稿 □

日本의 石油稅制

정 태 진
(쌍용정유 · 업무 2 과장)

日本의 石油稅制는 원유도입단계에서 原油関稅와 石油稅가 부과되고,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휘발유稅, 경유세, 석유가스세, 항공기 연료세가 각각 제품별로 부과되고 있다. 이들 석유관계 諸稅의 대부분은 그 稅收의 용도가 특정된 이른바 목적세이다.

原油関稅는 석탄 및 석유대책 재원으로 쓰여지며, 石油稅는 석유 및 代替에너지 개발대책 재원이 되고 있다. 휘발유세, 경유세, 석유가스세는 도로정비재원이며, 항공기 연료세는 공항정비 재원이 되고 있다.

1983년도 정부 예산은 石油諸稅 총세수액을 3조760억円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이는 총 국세수입중에서 9% 정도를 차지하는 것이다. 석유제세 수입의 용도를 살펴보면, 약 80%에 상당하는 2조 5천억円 정도가 도로정비 재원으로 쓰이며, 石油 및 代替에너지 개발대책에 충당되는 것은 약 4천 60억円으로 전체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석유제세에 대해서 설명해 본다.

1. 石油関稅

日本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輸入原油와 수입석유제품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종량세라는 점에서 종가세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다르다. 현재 수입원유에 대한 기본 세액이 Kℓ당 640円(42 ¢/Bbl)이며, 암모니아 제조용, 석유화학용, 중유탈황용 원료유에 대해서는 경감조치가 강구되어 있다. 수입석유제품에 대한 관세액은 〈表—1〉과 같으며, 특히 수입 중유제품에 대해서는 1972년 4월1일부터 관세할당제도(Tarjff Quota System)가 도입되고 있다. 이 제도는 관세액을 2

〈表—1〉 石油関稅

(1984년 1월 현재)

구 분		관 세 율 (단위 : 円/Kℓ)
원 유	암모니아제조용	110
	기 타	640
휘발유 나프타	항공기용 휘발유	3,033
	석유화학, 암모니아, 도시가스용	125
	연 료 용	1,075
	기 타	2,150
등 유		1,010
경 유		1,890
중 유		관세할당제(TQ제)
		1 차 / 2 차
	농림수산업용 B-A	면 세 / 3,930
	B—A	1,640 / 〃
	B—B	1,260 / 〃
	B—C	1,140 / 〃
	정제용(A, B, C)	640
LPG	석유화학, 암모니아, 알코올제조용	280円 / MT
	기 타	550円 / MT
윤활유	비중 0.8494 이하	6%
	절연유, 유동피라핀, 열처리유, 절삭유등.	6%
	항 공 기 용	11.6%
	기 타	12%

단계로 나누어 특정 수입자격자가 일정기간내에 특정수량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1차 세액을 적용하고(단, 농림어업용은 무세), 그 수량을 넘어서 수입하는 경우와 특정수입자격자 이외의 사람이 수입하는 경우에는 2차세액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수입潤滑油에 대해서는 다른 석유제품과는 달리 종가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 石油関税의 목적은 석탄 및 石油·代替에너지개발대책 재원을 확보하는 데 있으며, 83년도 예산에서는 석유관세 수입을 1천360억円으로 잡고, 이중 1천343억円을 석탄 특별회계로 충당하고 있다. 따라서 이 석유관세의 세수입은 주로 석탄개발 및 생산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石油 및 代替에너지 개발대책에 사용하고 있다.

2. 石油税

石油税는 従価税로서 국산 및 수입원유·수입석유제품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輸入原油에 대해서는 현재(CIF가격+관세)×3.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国産原油에 대해서는 채취장에서의 출하가격을 기준으로 같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또 수입석유제품에 대해서는 CIF 가격에 소요조정계수를 곱한 금액에 3.5%의 세율이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이 세율은 최근 4.7%로 인상·조정되어 금년 9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과세대상으로 새로이 LNG, LPG를 추가, 1.2%의 세율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 石油税의 목적은 주로 석유 및 代替에너지개발 대책재원을 확보하는 데 있으며, 83년도 정부예산에서는 총 석유세수입을 4천290억円으로 책정, 이중 4천250억円을 위와 같은 목적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일반재원으로 사용된다.

이 石油税는 1978년 정부예산안의 편성과 관련하여 금후 예상되는 석유대책의 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부과되기 시작했으며, 이는 종가세이기 때문에 원유가격, 수송비, 보험료 등이 변동하면 세액도 자동적으로 변경된다. 또한 현행 石油税에서는 석유화학용 및 암모니아 제조용의 나프타 등에 대해 면세조치가 취해지고 있으나, 원유도입 단계에서 석유세가 과세된 原油에서 생산된 같은 용도의 제품에 대해서는 면세조치가 적용되지 않고 있어 과세면에서 불균형이 있다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3. 石油消費税

1) 揮発油税

揮発油税라 함은 日本 세법상의 휘발유세와 지방도로세의 총칭이며, 이는 도로정비재원으로서의 목적세이다. 과세대상제품은 휘발유, 나프타, 등유이며 과세기준은 종량세로서 kℓ당 53,800円(83¢/USG)이다. 이 세액은 세법상의 휘발유세(45,600円/kℓ)와 지방도로세(8,200円/kℓ)를 합한 금액이다. 이 세액은 1979년 6월 이후 시행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납세의무자는 석유정제·원매업자로서 출고세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징세비용이 들지 않는데다가 휘발유 수요가 거대하여 재원확보 대책으로서 용이하게 실시되고 있다. 83년도 예산은 총휘발유세 수입을 1조9천5백3억円으로 책정하였으며, 전액 도로정비재원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휘발유세 수입이 諸石油税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3%로서 가장 비중이 높다.

〈表－2〉 石油消費税

(1984년 1월 현재)

구 분	과 세 대 상	세 율 (단위 : 円/Kl)
휘 발 유 세	휘발유, 나프타, 등유	45,600
지 방 도 로 세	〃	8,200
항공기연료세	제트연료, 항공기용 휘발유	26,000
경 유 세	경 유	24,300
석 유 가 스 세	LPG(자동차용)	17,500円/톤

2) 軽油税

軽油税는 1956년 6월부터 지방도로정비 재원을 강화하기 위해 軽油에 부과되고 있다. 이 경유세는 휘발유세와 같이 従量税라는 점에서 같으나, 다른 諸石油税가 국세인데 대하여 유일하게 지방세라는 점에서 다르며, 석유원매업자 및 판매업자를 징세의무자로 하는 출고세이다.

현재 kℓ당 24,300円(38 ¢/USG)이 부과되고 있으며, 농림수산용 및 철도용에 대해서는 면세조치가 취해져 있으나, 그밖의 것은 모두 과세되고 있다. 83년도 예산은 총 경유세수입을 4천6백89억円으로 책정하고 있으며, 이는 전액 지방도로 정비재원으로 사용된다.

3) 石油가스稅(LPG稅)

石油가스稅에는 1966년 2월, 자동차용 LPG를 대상으로 창설되었다. 日本의 경우 LPG가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63년경부터이지만, 휘발유에 비해 경제성이 높기 때문에 급속히 보급되었다. 따라서 LPG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도 도로정비에 의한 수익자가 되기 때문에 휘발유세와 과세균형을 이루기 위해 LPG에 대한 과세가 실시된 것이다.

따라서 石油가스稅도 휘발유세, 경유세와 같이 도로정비 재원으로서의 목적세이며, 또한 종량세이다. 稅收의 1/2이 도로정비 특별회계로 넘어가고, 나머지 1/2이 지방도로 정비재원이 된다. 세액은 17,500円/톤으로 정해졌으나, 수요업계에 대한 영향완화 및 물가대책상의 관점에서 1966년 2월부터 1969년 12월까지 2단계로 나누어 경감세율이 되었고, 1970년 1월 이후 기본세액 17,500円/톤이 부과되고 있다. 이 稅도 출고세로서 석유가스 제조업자 및 원매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다.

4) 航空機 燃料稅

항공기 연료세는 1972년 4월에 창설되었다. 항공기 연료에 대해서는 종래, 항공사업 육성 이라는 관점에서 항공기용 휘발유와 제트연료유에 대해서 면세조치가 취해졌으나, 이 면세조치가 1972년 3월말로 기한이 끝남에 따라 과세되게 되었다.

과세목적은 항공업계의 발전 및 공항의 정비확장, 소음대책, 보안, 관리시설의 확충 등을 위한 재원확보에 있다. 과세대상은 제트연료유를 포함한 모든 항공기 연료이지만, 국제선용 및 국가, 지방공공단체용은 비과세로 되어 있다. 항공기 연료세는 항공운송업자 또는 사용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기 때문에 이 점에서 다른 석유소비세와 다르다.

세액은 1974년 3월말까지 경감세율이 적용되었고, 1979년 4월 이후 현재까지 kℓ당 26,000円(40 ¢/USG)이 부과되고 있다. *

□ 海外短信 □

精油施設 감축절실

유럽石油업계 赤字누적 20%이상 줄여야

올해 유럽의 국제石油회사들은 油価하락 및 에너지수요감소에 따라 누적되어온 적자를 줄이기 위해 현재 하루 1천5백만~1천6백만배럴에 달하고 있는 기본精油생산능력을 적어도 20%이상을 감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유럽석유업계소식통들이 지난 15일 말했다.

엑슨, 스탠더드, 걸프등 국제석유회사들은지난해에도 유럽지역의 기본精油생산능력을 5.3% 감축했었다.

석유업계소식통들은 이들 국제석유 회사들이 精油부문의 적자를 해소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대부분의 석유업계 경영자들이 영업실적을 해치고 있는 精油생산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로 精油시설능력을 감축해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유럽精油회사들의 가동률이 지난해보다 약간 증가한 평균 약65%선에 달하고 있으나 이같은 가동률은 유럽精油산업이 흑자로 돌아서기에는 충분치 못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럽국제석유회사들은 精油산업합리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精油생산 과잉으로 이 계획의 중요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석유산업전문가들은 유럽精油공장의 가동률이 적정수준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 하루 4백만배럴 상당의 精油생산능력을 추가로 감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